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백승아 · 윤준병

이재관 • 문진석 • 민병덕

이원택 · 한정애 · 박 정

이수진 • 이병진 • 염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,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.

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, 농어업인의

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(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"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"를 "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조사"를 "농어업인의 질환현황 조사, 검강검진의 시기·항목"으로 한다.

다만,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4조(농어업인 질환의 예방·치 제14조(농어업인 질환의 예방·치 료 등 지원) ① ~ ③ (생 략) 료 등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 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-----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여성농어 업인 육성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(5) -----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 --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,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검강검진의 시기 · 항목-----